
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9호서식] <신설 2023. 11. 27.>

과징금납부통지서

(수납기관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
②상 호(명 칭)	
납 대표자 성명	
부 주 소	
자	
③위 반 일 자	
④위 반 행 위	
⑤납 부 금 액	
⑥납 부 기 한	
⑦수 납 기 관	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4항·제9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·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·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

과징금영수필통지서

(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
②상 호(명 칭)	
납 대표자 성명	
부 주 소	
자	
③위 반 일 자	
④위 반 행 위	
⑤납 부 금 액	
⑥납 부 기 한	
⑦수 납 기 관	
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귀하 수납인	

과징금납부영수증

(납부자 보관용)

①발 행 번 호	
②상 호(명 칭)	
납 대표자 성명	
부 주 소	
자	
③위 반 일 자	
④위 반 행 위	
⑤납 부 금 액	
⑥납 부 기 한	
⑦수 납 기 관	
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(인) 국토지리정보원장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[인] 수납인	